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85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임종득·서천호·나경원  
이준석·김예지·김기현  
김정재·박정하·임이자  
김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주택구입, 농지·어장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유실수·조경수·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실정인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과 초기 생활비 부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과 도시민의 귀농 진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농촌의 유희농지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융자 등”으로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융자알선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